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시험 시행지역 확대

구분	기존	변경 후
시행지역	12개 지역 시행	13개 지역 시행(충남 추가)

○ 지적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확대(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기존	변경 후
		지적장애인	시험시간 1.2배 연장 기타 별도시험실 배정

○ 응시편의 제공 증빙서류 추가 인정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기관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법」 제 3조에 의한 종합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임신부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외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추가 인정**

○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사유 추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 확대 및 종류 다양화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신분증 인정 범위는 21쪽 **10. 수험자 유의사항** 및 큐넷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 제출서류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외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제출서류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삭제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25. 12. 8.(월) 09:00 ~ 12. 12.(금) 18:00	'26. 1. 8.(목) 09:00 ~ 1. 9.(금) 18:00	'26. 1. 17.(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6. 2. 19.(목)	'26. 2. 19.(목) ~ 3. 11.(수)	'26. 3. 25.(수)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공고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전국 13개 지역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충남

※ 충북, 경북, 전남지역 확대시험장 개설 예정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번호 1644-8000)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뿔로 279	02	2137-0555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15
경남지사 필기시험부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울산지사 필기시험부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5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76
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2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92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99
전북지사 자격시험부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4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2
충남지사 필기시험부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27	041	620-7644

※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큐넷 홈페이지 공지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구성

시험 과목 수	문제 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택1형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

구분	시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25	12:35~13:50 (75분)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6. 1. 17.)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분	시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30 (60분)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50	11:00~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2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3:20	13:30~15:00 (90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구분	시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08 (113분)
점심시간 13:08 ~ 14:00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16:03 (113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구분	시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55 (85분)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15	11:25~13:33 (128분)
점심시간 13:33 ~ 14:25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25	14:35~16:43 (128분)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시간 연장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 이용 등 출입이 불가하니 개별 도시락을 준비하시어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6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6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6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6년 1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정기 접수: 2025. 12. 8.(월) 09:00 ~ 12. 12.(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026. 1. 8.(목) 09:00 ~ 1. 9.(금) 18:00 【2일간】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300 X 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킥계좌이체) 이용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정기 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
-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구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사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의 가족(배우자·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100%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첨부) •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사람(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이 사망하여 장례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첨부)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 종류 고시」 에서 지정한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송신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근무명령 공문,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 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방법 2: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접수기간 포함)에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아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 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 ②, 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 ②, 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2)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 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음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①,②,③호 중 하나
지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④, ③+④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신장·신장장부·요추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두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시간 산정 방법 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시각장애 경증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 필기(답) 시험 적용 시
 ⇒ 시각장애 경증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5}=90분]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에 부여한 시간[(60분*0.5)=30분] = 120분

-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다만, 지체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와 상이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임신부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상지+하지)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결격사유 조희]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lic>)
-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써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극적인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25. 10. 17.(금) 09:00 ~ '26. 1. 16.(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lic>)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전화번호: 02)786-0845
- 접수기간: 2026. 02. 19.(목) 09:00 ~ 03. 11.(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 서류는 접수기간에 도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접수기간 이전 및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모두 인정되지 않음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2026. 03. 11.(수)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2026. 03. 11.(수), 18:00까지 방문

마. 응시자격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을 절대로 동봉하지 않을 것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다만, 팩스 민원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증명서 발급 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할 경우 증명서 하단에 '사본'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PDF 파일이나 원본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없을 경우 사본으로 간주함
- 서류 사본과 관련된 예시는 '[서식5] 서류 인정 여부 안내문' 참조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 표기 요망
- 제출서류 도착 여부는 전화로 확인이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의 등기조회 서비스 이용 요망.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열린광장-1급 국가시험 서류도착 확인' 메뉴는 비정기적으로 수시 업데이트되며, 협회에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이후 확인 가능
 - ※ 서류도착 여부에 대한 일대일 대응 시 전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격 서류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 성적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 - '나의 자격정보'에서 본인 자격번호 확인 가능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1] <개정 2019. 8. 1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동일교과목 심의결과 반영 범위 안내) 시험 시행 연도 이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일교과목 심의 신청 접수된 과목에 한하여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반영
 ※ 동일교과목 심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 내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서식 다운로드 주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자료실 →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다운로드)

※ 해당 양식 외 인정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공지사항 →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서식 2]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 등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각 1부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내거소 신고증' 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과 동일 필수)

1.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 취득자

심사구비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	----------------

2. 최종학력_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2-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③대학원 성적증명서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3-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③대학교 성적증명서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③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④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3.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③(편)입학 한 학교 성적증명서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③(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③(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시험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3-6. 고등학교 또는 전문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를 취득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③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④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③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시험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3-7.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③외국대학 성적증명서 ④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 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⑤출입국사실증명서 ⑥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⑦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③외국대학 성적증명서 ④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 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⑤출입국사실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시험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③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폐업기관이더라도 설치근거법령 확인 가능한 서류(시설신고증 등) 제출 필수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④건강보험특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⑤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③양성교육 수료증(사본) ④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폐업기관이더라도 설치근거법령 확인 가능한 서류(시설신고증 등) 제출 필수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⑤건강보험특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⑥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비영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6.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1호에 따라 별도 승인된 자를 의미함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③외국대학 성적증명서 ④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⑤출입국사실증명서
--

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2026. 2. 19.(목) 부터
- 통지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에서 개별 통지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상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 지역번호(02) 또는 협회 연락처 수신거부로 연락 불가능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아. 결격사유 조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더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8.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2026. 1. 17.(토) 17:00 ~ 1. 23.(금) 18:00 [7일간]
-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2026. 2. 19.(목)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자동안내전화(ARS): 1666-0100 [유료, 4일간]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6. 3. 25.(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수험번호 게재)

9.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대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 ※ 자격증 발급 일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됨(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진행되는 심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다음 진행되는 심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임)
 -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라. 발급 관련 기타 안내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5

10.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바일 신분증) ①모바일 주민등록증, ②모바일 운전면허증, ③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①,②,③ 인정발급처 :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윌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④ 모바일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
 -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①(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정부24·PASS앱·KB스타뱅킹 국민지갑·우리WON뱅킹 원더윌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②(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①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② 정부24·PASS·네이버·카카오·삼성윌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③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혹백,컬러)된 재학생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생증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삼성윌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 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0점)처리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0점)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0점)로 합니다.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수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 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 참조 또는 HRD 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응시편의 차등 적용 제공
 -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단, 응시편의 제공 요청사항 변경은 **시험시행 약 2주 전까지(2026. 1. 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식 3] 응시편의 제공 신청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 요청서’ (큐넷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시 장애등급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 가능, 큐넷(www.Q-Net.or.kr/site/welfare)의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참조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02-786-0845)**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접수번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별첨된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 여부를 취소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심사 서류를 접수합니다.																																					
2. 수험자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명	사회복지사 1급	2003년 ~ 2009년 응시여부	응시() 미응시()																																		
성 명		사회복지사 2급 자격번호	* 2급 소지자인 경우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	수험 번호																																			
휴대전화		비상 연락처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대학교(4년제)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2년제) <input type="checkbox"/> 고졸(양성과정교육과정에 해당)																																				
3. 제출서류 (해당란에 ☑) (*사본으로 기재된 서류 이외 모두 원본 제출)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졸업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학점은행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위수탁협약서(사본)																																			
	<input type="checkbox"/> 외국대학 졸업·성적증명서(원본)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확인서(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은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법인) 신고증(사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특실확인서(사본)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사본)	<input type="checkbox"/> 정관(사본) *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주의 사항 >		< 심사 표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 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최종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심사기관용으로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심사</th> <th>심사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차</td> <td>합격 보류</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2">2차</td> <td>합격 보류</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2">3차</td> <td>합격 불합격</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colspan="2">3. 제출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 시 서류 발송에 대한 수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방협회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4. 서류 심사 중 추가 보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수신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5.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류심사는 자격증 발급 심사가 아니므로 수수료 및 사진을 동봉하여도 제출된 사진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6. 서류 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및 지방협회로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구분	심사	심사자	1차	합격 보류				2차	합격 보류				3차	합격 불합격				3. 제출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 시 서류 발송에 대한 수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방협회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서류 심사 중 추가 보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수신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류심사는 자격증 발급 심사가 아니므로 수수료 및 사진을 동봉하여도 제출된 사진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서류 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및 지방협회로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를 완료 해야만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구분	심사	심사자																																			
1차	합격 보류																																				
2차	합격 보류																																				
3차	합격 불합격																																				
3. 제출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 시 서류 발송에 대한 수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방협회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서류 심사 중 추가 보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수신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류심사는 자격증 발급 심사가 아니므로 수수료 및 사진을 동봉하여도 제출된 사진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서류 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및 지방협회로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를 완료 해야만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서식 2]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상기인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다 음 -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경력기간	확인자
			~ (년 개월)	(인)
			~ (년 개월)	
			~ (년 개월)	

- * 근무부서 및 직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자는 **경력 기재란을 확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으로 표기(1일 8시간 기준, 1년 2,080시간)
- * 이직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개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직인)

시설 대표자		시설 연락처	
시설등록번호		등록일	
시설 소재지			

- *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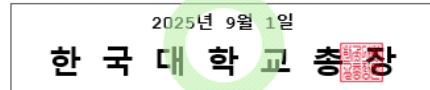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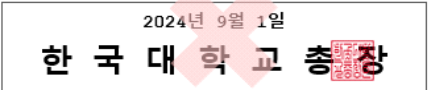
PDF 증명서 사본 처리



본 증명서는 인덱스화된(사실확인도움)인 한국사증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가지는 한국증명서로서, 출력물은 사본입니다. (www.nacksoo.com에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시거나 위변조된(위변조)된 발급일로부터 90일(Adobe Acrobat Reader) 판본)

- 증명서 발급 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할 경우 증명서 하단에 “~PDF출력물은 사본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사본 처리 (바로 출력하여 위변조 바코드 출력되도록 하여야 함)
- 증명서 바로 출력을 하거나 ‘PDF파일이나 원본으로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한국대학교 홈페이지 (www.nacksoo.co.kr)에서 원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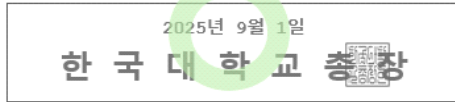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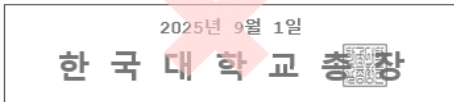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한국대학교 홈페이지 (www.nacksoo.co.kr)에서 원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의 경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출력되어야 함
- 서류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더라도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출력할 경우 사본으로 간주

팩스 민원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급된 서류만 인정

발급번호	제F0010호	담당자	김복지
소속기관	한국대학교총장	전화번호	02)786-0845

발급번호	제F0010호	담당자	김복지
소속기관	한국대학교총장	전화번호	02)786-0845



한국시 복지동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교부번호	2025-0001-009	담당자	박사회
교부기관	한국시복지센터	전화번호	02)786-0190

복지동
무료
2025. 9. 1.

문서발행일
2025년09월
01일

한국시 복지동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교부번호	2025-0001-009	담당자	박사회
교부기관	한국시복지센터	전화번호	02)786-0190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팩스민원 시 교육기관(대학)의 발급번호 및 교부자 등 기재와 교부기관(주민자치센터)의 교부기관명, 교부번호, 담당자, 주민자치센터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입증지가 날인되어 있어야 함